

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

인적사항	①성명	(서명)	②생년월일	
	③자격명 (자격종목)		④자격번호	
소속회사	⑤회사명		⑥사업자등록번호	
	⑦대표자		⑧영업소재지	
	⑨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종류		⑩국가유산수리업등 의 등록번호	
	⑪근무기간		⑫전화번호	
현장경력1	⑬참여사업명		⑭발주자	
	⑮사업비(천원)		⑯사업구분	
	⑰사업기간		⑱참여기간	
	⑲담당업무		⑳국가유산명 및 유형	
	㉑사업개요	※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.		
현장경력2	⑬참여사업명		⑭발주자	
	⑮사업비(천원)		⑯사업구분	
	⑰사업기간		⑱참여기간	
	⑲담당업무		⑳국가유산명 및 유형	
	㉑사업개요	※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.		

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·자격 및 근무처 등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발주자 또는 사용자(대표자)

직인

비고(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)

1. ⑤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(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)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(상호변경) 또는 (흡수합병)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 2. ⑩란의 근무기간은 소속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적으며, 현재 근무 중인 경우 “근무 중”으로 적으면 됩니다.
 3. ⑬란의 참여사업명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실제 참여한 국가유산수리, 감리 또는 실측설계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.
 4. ⑭란의 발주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, 감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기관명·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.
 5. ⑮란의 사업비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참여한 국가유산수리, 감리 또는 실측설계의 완료금액(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)을 적고 공동도급 계약방법 중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고, 일부 공종(工種)에만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지분율로 산정합니다. 하도급의 경우는 직접 시공한 하도급 국가유산수리분만 적용합니다.
 6. ⑯란의 사업구분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중 참여사업별 특성분류표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적용합니다.
 7. ⑰란의 사업기간은 착수일과 완료일의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.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사업기간을 적용합니다.
 8. ⑱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국가유산수리, 감리 또는 실측설계에 실제 참여한 기간(국가유산수리, 감리 또는 실측설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합니다)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수일과 완료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.
 - 가.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 현장에 상주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.
 - 나. 해당 국가유산수리, 감리 또는 실측설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“근무 중”으로 표기하며, 이미 종료일을 “근무 중”으로 신고한 경력이 종료되었으면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.
 9. ⑲란의 담당업무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중 참여사업 담당업무 분류표에서 해당하는 업무를 적용합니다.
 10. ⑳란의 사업개요는 수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며, 건조물 등을 신축, 복원 및 보수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, 주요내용 등을 적용합니다.
 11. 현장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현장경력2 다음에 이어서 ⑬, ⑭, ⑮, ⑯, ⑰, ⑱, ⑲, ⑳, ㉑을 적용합니다.
 12. 경력확인서 발급 시 일련번호는 표시하지 않습니다.
-